

1. 개정이유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 운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IC AO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표준화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항행안전시설 표준화 및 용어 등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6조, 제38조)
- 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연접한 구역 내 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16조)
- 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 운용 내용 등 구체화(안 제19조의4)
- 라.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등 구체화(안 제19조의5)
- 마.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 및 절차 등 구체화(안 제19조의6)
- 바.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용 등 구체화(안 제19조의7)
- 사.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구체화(안 제19조의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전파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나. 항공종합통신망(ATN)
라. 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M)

4. 그 밖에 정보통신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의 제목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4호”로 한다.

-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정된 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구역의 길이와 폭 및 경사도 등을 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대

2. 개방구역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러지기 쉬운 재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2.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의 구조와 강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인 확보기준 및 추가 확보 필요성 검토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는 엽총, 열화상카메라, 폭음경보기, 음파 발생기 등을 말한다.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정보,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 장비 및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
4. 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 및 절차)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운영자와 지방항공청이 공동으로 된다.

②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공군 또는 해군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4. 지상조업사업자(「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조류 전문가(조류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조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는 공항 표점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조류충돌 발생 확률과 충돌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도 등을 포함하여 표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제4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시설규모 또는 면적					
사용허가 신청내용					
임시사용 기 간				공사완료 예정 일	

「공항시설법」 제4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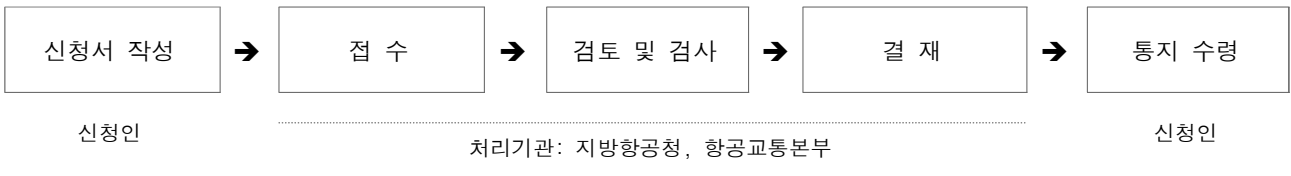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 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 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그 밖에 전파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 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 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u>항공고정통신시스템(AF TN/MHS)</u> 나. <u>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 (AIDC)</u> 다. (생 략) 라. <u>항공종합통신시스템(AT N)</u> 2. · 3. (생 략) <u><신 설></u>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 ----- ----- -----. 1. ----- 가. <u>항공고정통신시스템(AF TN)</u> 나. <u>항공종합통신망(ATN)</u> 다. (현행과 같음) 라. <u>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 (SWIM)</u> 2. · 3. (현행과 같음) <u>4. 그 밖에 정보통신 등 신기술</u>

제16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신 설>

<신 설>

<신 설>

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시설

제16조(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설정된 구역”이란 국토교통
부장관이 그 구역의 길이와 폭
및 경사도 등을 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
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대
2. 개방구역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러지기 쉬운 재질에 관한 사
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2.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의 구
조와 강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1조제3호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
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
--.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
력·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
는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공항
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인 확보기준 및 추
가 확보 필요성 검토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②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는
엽총, 열화상카메라, 폭음경보
기, 음파 발생기 등을 말한다.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
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
석, 정보, 자료관리에 관한 사
항

<신 설>

<신 설>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
장비 및 이에 대한 운영에 대
한 사항

4. 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 수립의 시기 및 절차)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
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
험관리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
여 검토를 받은 후, 그 검토 결
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
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
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
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
운영자와 지방항공청이 공동으
로 된다.

②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신 설>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항행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무원

2. 공군 또는 해군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
운송사업자

4. 지상조업사업자(「항공사업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5. 조류 전문가(조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조
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
가는 공항 표점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조류충돌
발생 확률과 충돌 시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도
등을 포함하여 표 형태로 제시
하여야 한다.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제5항-----

-----.

1. ~ 3. (생략)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7조(금지행위 등) ① 법 제56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 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 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 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 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 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 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u> 1. <u>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 한 서류</u> 2. <u>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u> 제47조(금지행위 등) ① -----
--	---

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 등)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2.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 및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한 서류

3. 제1호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이란-----
-----.

1. 2. (현행과 같음)

3.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u>입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u> <u>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u> <u>해당한다)</u>	
--	--